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4년 9월 13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 라. 상정일자: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9. 3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노상옥 생활환경국장)

### 가. 제안이유

- 최근 인건비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구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대행업체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여건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조정(안 제7조 별표)
  - 분뇨(10ℓ) 180원 → 220원
  - 정화조 기본요금(0.75m<sup>3</sup>) 22,500원 → 23,800원
  - 정화조 초과요금(0.1m<sup>3</sup>) 1,960원 → 2,240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건비 및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구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행업체의 인건비 보전을 위해 수수료 인상을 통한 현실화로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금액을 분뇨는 10ℓ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정화조의 기본 요금은 0.75m<sup>3</sup>당 22,500원에서 23,800원으로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0.1m<sup>3</sup>당 1,960원에서 2,240원으로 인상하였음. 아울러 정화조의 할증 요금 구간에 야간 및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최근 5년간의 통계청 자료 현황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꾸준히 상승해 왔고, 최저임금과 노임단가(일)도 같은 추세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유가격은 상황에 따라 변동 내역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의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청소 수수료 조정을 위한 근거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황, 인력 및 장비 분석, 수집·운반 원가분석 등을 지난해 6월 통보함.
  - 용역 결과를 보면 정화조 기본 금액을 22,500원에서 30,100원으로 7,600원으로 33.8%를 인상하고 초과 금액을 1,960원에서 2,620원으로 33.7%를 인상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또한 분뇨도 180원에서 260원으로 44.4% 인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 물가의 상승으로 대행업체의 청소인력 충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기술한 통계와 같이 해당 비용의 상승이 예측되므로 합리적 경영 유지가 어려움이 예상됨. 서울시 물재생센터가 있는 중랑물재생센터(성동구), 탄천물재생센터(강남구), 서남물재생센터(강서구)는 타구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편으로 높아지는 유틸비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우리구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월 평균 급여(세후)가 약 450만원인 반면 분뇨처리 수집·운반 종사자는 약 390만원으로 동일가치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8.6% 수준 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임.
  - 우리구 정화조 현황을 보면 50인조 미만 정화조가 전체 정화조 시설 22,715개소 중 16,896개소로 전체 정화조 시설에서 7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기본요금의 전체 비중이 높은 50인조 이하 서민의 인상폭을 최소화(5.8%)하

였고, 정부 노임단가 상승분을 적용한 금액으로 2024년 요금을 인상한 타 자치구의 초과요금 평균금액(2,240원)과도 일치하여 정화조 요금의 인상이 적정화다고 판단됨. 아울러 분뇨요금은 임시화장실 수거용이 대부분으로 인상률은 22.4%로 높으나 연간 수거량이 전체 정화조의 0.5%(1,065톤)로 서민 부담경감 요금과는 거리가 있어 현실적인 인상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건물주 요청으로 공휴일(일요일 및 국경일)에 청소할 경우 공휴일 할증요금(7%)를 징수하고 있으나 토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외되어 있음. 토요일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원활한 작업을 시행하고 건물주의 편의를 돕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서울시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총원가의 73%에 불과한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인건비 및 소비자 물가 상승을 토대로 한 제반 경비를 반영하여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되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한 구민 부담의 최소화가 그 목적으로 금번 수수료 변동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07 호
----------	---------

제출연월일: 2024. 9.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인건비 등 물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구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대행업체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여건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조정  
(안 별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3) 물가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원안가결

라. 입법예고(2024. 8. 22.~ 9. 11./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 표)

###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분 뇨		10ℓ	220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기 본	750ℓ까지	23,800원	
	초 과	100ℓ당	2,240원	
	할증	야간 및 공휴일 (토요일 포함)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7.0%
		지하2층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5.0%

※ 지하할증 : 외부로 배출청소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할증요금 제외

※ 야간할증 : 야간 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